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퍼블리시티 문제와 해결방안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Juror's Publicity Problem and Solution

박 호 현*
Park, Ho-Hyun

목 차

- I. 서 론
- II.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시민참여의 요구
- III.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퍼블리시티의 문제
- IV. 퍼블리시티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 V. 결 론

국문초록

국민참여재판은 시민이 직접 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사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확보 및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목적을 위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이 민주성 내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긍정적 부분도 있지만 배심원 평결에 대한 신뢰성 문제, 배심원 선정의 절차적 문제, 비용 증대(시간적·경제적)문제,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사법절차의 시민참여 제도가 민주적 정당성과 시

논문접수일 : 2017. 02. 17.

심사완료일 : 2017. 04. 19.

게재확정일 : 2017. 04. 19.

* 경찰학박사·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민에 대한 사법의 신뢰성 증대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 진실발견과 비용 증대(시간적·경제적) 등의 문제는 사법절차의 시민참여를 통해 더욱 눈여겨 지켜보아야 할 문제들이다. 그리고 영화나 매스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의 뇌리에 박혀있는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배심원 평결의 신뢰성과 배심원 선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추첨이라는 우연성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의 근본적 문제는 낮은 접수율과 높은 철회율 및 배제율에 있다. 그리고 높은 항소율과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의 부재는 국민참여재판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문제들보다 국민참여재판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판전(前) 시민들이 텔레비전 내지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재판절차에 대한 편견을 미리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증인출석과 증거제출을 통해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배심원 내지는 재판관의 심증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 재판절차에서 퍼블리시티라고 하는 시민들의 재판전(前) 편견은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제어 : 국민참여재판, 퍼블리시티, 편견, 시민참여, 민주성, 신뢰

1. 서론

형사사법절차는 검사 내지 법관들 즉 법조인들에 의해 사법절차가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 그동안 그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다. 특히, 사법시험이라는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들은 일정한 교육을 받고 이후 검사 및 법관 그리고 변호사 등의 법조 인력으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조인력 이외의 시민들은 형사사법절차의 중요한 절차인 수사단계, 기소단계, 공판단계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검사와 법관 등 법조 인력들은 법률규정을 통해 일정한 신분을 보장받고, 전문적 법률지식과 오랜 기간 쌓여온 실무경험으로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오랜 기간 자신들만

의 영역을 구축해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법률가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일제 강점기의 잘못된 관행이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였고, 미군정기와 독재정권을 통해 사법체계가 상당히 부정적인 면들로 많이 고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조인들의 참여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주체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주체는 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절차의 투명성을 확립할 수 있는 시민에 의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참여를 통한 형사사법의 민주화 내지는 투명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조직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이 실질적으로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해 사법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수렴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시민의 의견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해 보려고 한다. 특히, 사회적 이슈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논의는 의미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주로 국민참여재판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소위 정치적 사건으로서 나꼼수사건과 안도현시인사건 그리고 조희연사건과 같이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내지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된 사건 그리고 전·현직 정치인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그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통해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시민들의 상식에 기초해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II.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시민참여의 요구

1. 사법조직에 대한 반성

해방 이후 우리의 사법시스템은 정부수립과 더불어 미국의 정치제도 및 사법

제도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민주성이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성장해 왔고 특히, 해방 전(前) 일제 강점기의 식민 사법을 청산하지 못하였으며, 수십 년간의 독재 정권에 의해 사법의 관료화와 권위주의가 사회의 전반적인 병폐로 남아있다.¹⁾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법제도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사법절차에 시민들이 참여해 절차진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또한 수렴하여 시민들의 일반적 상식과 법감정을 반영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법시스템은 전형적 관료사법을 고수해 오고 있다. 관료사법은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법률전문가들이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사법절차에 참여하고, 관료제를 근간으로 일정한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사법시스템을 말한다.

관료제(Bureaucracy)는 국가조직의 공적 업무를 맡아 행하는 ‘관료’의 의미로 사용되던 용어이고, 이러한 의미는 이후 다양한 조직을 뜻하는 의미로 확대되었다.²⁾ 국가의 공적 목적과 목표달성을 위해 도입된 관료제는 효과적인 조직관리와 합리적 운영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계층적 조직체계를 관리하는 권력적 측면도 가지고 있다.³⁾

따라서 형사사법제도는 관료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전문적 법률 지식을 요구하는 형사사법기관의 구성원들은 법적 전문성이 요구되고, 효과적 절차진행을 위한 합리적 관리 및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법적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 선발로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법률과 규칙을 강화하며, 계층적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관료사법은 효과성과 합리성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인식되어 왔다.⁴⁾

1) 김석준, 「미군정 시대의 국가와 행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한영문화사, 2010; 이국운, 「법률가의 탄생」, 후마니타스, 2012 참조.

2) 김태룡, 「행정이론: 행정사와 이론을 중심으로」, 대영문화사, 2010, 219면; 윤지영, “재판전 단계에서의 국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연구총서 제1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28면.

3)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2012, 138-144면; 최선우, 「경찰학」, 그린, 2013, 206-207면.

4) 윤지영, 앞의 책, 28-30면.

현재의 사법시스템이 가진 문제점을 설명할 때 흔히 일제의 식민사법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⁵⁾ 식민사법은 사법과 행정의 분리되고, 법률적 지식을 가진 검사 및 변호사 등의 법조인력이 형성되어 기존의 사법시스템과는 새로운 사법제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시민의 인권 내지는 기본권이 보호되지 못하였고, 일제식민지라는 사회적 상황을 통해 사회통제가 중요시되는 사법제도가 형성되었다. 결과적으로 국가경찰로서 식민지배를 합리화 또는 정당화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다. 즉, 상호견제와 균형이 결여된 중앙집권적 관료사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⁶⁾

해방 이후 일제의 식민사법을 해체시키고 사법제도에 민주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으나, 미군정하의 사법개혁들은 정부수립 이후 국가의 안정을 위해 보수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졌다.⁷⁾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의 이념경쟁을 해결하지 못한 채 수립된 정부는 좁게는 사법제도와 넓게는 형사사법제도의 민주성과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도 그 목표를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1960년대는 검찰조직과 법원조직에 대한 조직체계와 인사체계에 대한 각종 통계·분석적 기법이 활용되었고, 이러한 활용은 사건처리에 대한 신속성과 효과적인 면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관료제를 강화시킨 측면도 있다. 그리고 1971년에는 사법파동을 통해 정부와 법원간의 갈등이 발생하였으나 명확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결국 유신체제로 이어졌다. 유신헌법은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과 법관추천회의제도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하도록 하였다.⁸⁾

5) 문준영, 앞의 책, 605-609면.

6) 문준영, 앞의 책, 435-450면; 이국운, 앞의 책, 17-25면.

7) 김석준, 앞의 책, 248-254면; 이국운, 앞의 책, 22-28면(법원과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했던 대법관 추천위원회와 간이법원제도가 시행되지 못함에 따라서 법관 인사를 비롯한 법원행정 전반에 관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초점이 맞추어 졌으며, 검찰도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대검찰청 산하에 중앙수사국이 설치되었다. 검찰관할의 사법경찰기관이 설치되고 그 권한이 강화되면서 검찰 중심의 전국 수사망이 형성되었다).

8) ‘유신헌법’은 대법원판사의 임명방식이나 자격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1973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대법원판사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장과

관료사법, 식민사법, 권위사법을 통해 사법조직이 가진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들은 형사사법제도 내지 사법제도에서 지양되어야 하고, 이러한 세 가지 사항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시민이 참여하여 민주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2. 형사사법의 변화와 개혁

전관예우, 접대비리, 사법브로커 사건 등을 통해 그동안 우리의 형사사법시스템은 시민들에게 많은 사법불신을 보여 왔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사법에 대한 다양한 변화와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4차례의 사법파동(1971년, 1988년, 1993년, 2003년)은 사법제도가 국가권력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하고 불합리한 간섭을 받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된다.⁹⁾ 특히, 1987년 6·29 선언은 재판절차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¹⁰⁾

법관의 임용 및 승진 등 법원조직과 법원인사에 관해서도 국가권력과 정치권력의 외압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조직의 관료화

대법원판사의 임명방식은 제5공화국 헌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윤지영, 앞의 책, 34면).

9) 안경환·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2005, 25-26면 참조. 사법파동은 사법권 독립을 위해 주로 소장 판사들이 중심이 되어 벌인 항명사건으로서 사법부는 공식적으로 1차, 2차, 3차 사법파동만을 인정하고 있지만, 4차, 5차 사법파동을 사법파동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섯 번에 걸쳐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사법파동은 1차 사법파동 당시 언론에서 명명한 것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사법파동 대신 사법민주화운동으로 바꾸어 불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이현환, “한국 사법사에 비추어본 1971년의 사법파동”, 「법과사회」 제15권 제1호, 법과사회이론연구회, 1997; 한옥신, “사법파동의 교훈”, 「사법행정」 제12권 제9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71 참조).

10) 이범준,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궁리, 2009, 13-25면(6.29선언 이후 불어 닦친 민주화의 열기와 그에 따른 민주화 과정에서 재판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외압, 그 중 권력기관인 국가정보기관의 재판절차 간섭의 배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재판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존재하지만, 재판절차에 따른 재판관의 판결이 국가의 권력기관과 정치권의 외압 및 청탁으로부터의 왜곡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리거나 양형을 결정할 때 최소한 정치권력이나 국가권력기관을 의식하여 결정을 내리는 일은 없어졌기 때문이다).

및 서열화가 법관들의 독립을 방해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¹¹⁾

그러나 법관과 사법절차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정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은 다양한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¹²⁾

첫째, 사법절차는 지금까지 사법시험이라는 시험제도를 통해 뽑힌 사람들을 교육하고 이러한 교육으로 법적 전문성을 가진 법조 인력을 길러내어 그들의 특수한 영역으로 다루어왔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와는 달리 민주성을 확립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¹³⁾

둘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시민들이 직접 사법절차에 참여하여 그들의 일반적 상식과 법감정을 투영함으로써, 사법절차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사법절차의 민주성을 확립하고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일반적 상식과 법 감정을 재판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¹⁴⁾

셋째, 재판절차의 시민참여를 통해 법이론과 법현실의 간극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소송법상 대등한 당사자적 지위를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검사에 비해 동일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국가기관으로서 피고인에 비해 법적 지식과 전문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검사의 신문절차에 따라야 하는 증거의 객체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시민의 사법 참여이다.¹⁵⁾

11) 문준영, 앞의 책, 717-730면.

12) 이 내용은 탁희성·최수형,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V):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평가와 정책화 방안”, 「형사정책연구 연구총서 제27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참조.

13) 법관의 임용 및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관의 신분보장 자체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관의 임용 및 보직에 있어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가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사법, 시민에 의한 사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자세한 내용은 한인섭·한상훈, 「국민의 사법참여」, 경인문화사, 2010 참조).

14) 장규원·박호현, “형사사법에서 시민참여에 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2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4, 241-244면.

15) 안경환·한인섭, 앞의 책, 29-30면.

넷째, 사법절차의 불신은 법조인력의 담합과 유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판·검사출신의 변호사가 사건수임을 한 경우 전관예우에 대한 양형의 특혜, 전관예우를 통한 사건수임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브로커 비리, 변호사가 판·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일정한 편의 내지 이익을 제공받는 접대 비리의 해결은 어떠한 인적 네트워크가 있을 수 없는 일반시민들의 사법참여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¹⁶⁾

형사사법시스템과 함께 사법절차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도와 노력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직접 사법절차 내지 형사사법절차에 시민들이 참여해 절차의 신뢰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3. 참여민주주의의 보장

사법절차에 단순히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사법의 민주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재판절차에서 현출되는 증거와 증인만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만 한다. 즉 소극적인 참여가 아닌 사건해결을 위한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¹⁷⁾

고대 아테네의 정치체제를 직접민주주의로 설명한다.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여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 의견들은 합의와 동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반영을 위해서 민회가 존재했다. 또한 국가의 관료를 선출하는 방법이 제비뽑기의 형태를 취했다. 지금의 선출에 의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¹⁸⁾

하지만 우리의 현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대한민국 18대 국회는 의원정수 299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41명, 47%가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판·검사

16) 탁희성·최수형, 앞의 책, 61면.

17) 장규원·박호현, 앞의 글, 243-244면.

18) 이에 대해서는 Michael Phillips·Ernest Callenbach/손우정·이지문 옮김, 「추첨 민주주의: 선거를 넘어 추첨으로 일구는 직접 정치」, 이매진, 2011, 191면.

내지 변호사 등의 법조인 출신은 60명으로 20%, 그러나 노동자 출신은 3명으로 단 1%를 차지했다. 그리고 여성은 14%, 유권자의 41%를 차지하는 19~39살은 7명으로 2%를 나타내었으며, 전체 인구의 17%인 50대는 142명으로 48%를 차지했다.¹⁹⁾

아테네의 정치제도는 시민참여에 의한 선출 즉 추첨이었다.²⁰⁾ 그리고 정치제도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법체제도 존재했다. 탄핵재판소의 배심원도 추첨을 통해 선출되었고, 이러한 추첨은 우연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사법절차에서의 시민참여는 민주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²¹⁾

우리 헌법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1조는 사법절차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²⁾

이러한 사법절차에서 시민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시민들의 일반적 상식과 법감정 및 가치를 절차에 투영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국 시민참여는 시민이 직접 법조인들을 견제하고 통제한다는 것이다.²³⁾

따라서 사법절차의 시민참여는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시민들이 각자의 생각을 사법절차에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²⁴⁾

19) 국회의원총람편찬위원회,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총람(2008) 참조.

20) 이하의 내용은 이지문, 「추첨민주주의의 강의」, 삶창, 2015, 168면(고대 로마와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도시공화국에서도 추첨에 의한 정치체제가 이루어졌다. 14세기 피렌체에서는 예비 선정위원회를 통과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비밀투표를 실시해 3분의 2 이상 득표한 사람들의 이름을 가죽가방에 넣어 무작위의 방식으로 행정관을 선출했다. 베네치아는 13세기 후반 추첨과 투표의 방식을 함께 활용해 최고 지도자인 도제를 뽑기 시작했고, 공화국이 붕괴된 1798년까지 이 제도가 유지되었다).

21) 자세한 내용은 柄谷行人/송태욱 옮김, 「일본정신의 기원」, 이매진, 2003 참조.

22) April Carter/조효제 옮김, 「직접행동」, 교양인, 2007, 171-174면(시민의 자유는 사회 참여 및 정치참여 그리고 사법참여로 대변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인정한 이념이 바로 민주주의 이념이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주권재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재의 정치이념인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주권재민을 바탕으로 시민의 직접참여의 요구이며, 특히 사법절차에서의 시민참여는 어떠한 분야의 시민참여보다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3) 신진욱, 「시민」, 책세상, 2008, 129-134면.

그러므로 시민들은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 그리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Ⅲ.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퍼블리시티의 문제

다양한 시민들의 사법절차 참여를 통해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가 국민참여재판 제도이다. 그러므로 국민참여재판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수렴은 국민참여재판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퍼블리시티(Publicity)를 통해 미리 일정한 사건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다.²⁵⁾ 따라서 아래에서는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시민의 의견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논의는 의미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1. 국민참여재판과 표현의 자유

소위 나꼼수 사건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박OO 전(前) 대

24) 신진욱, 앞의 책, 136-138면.

25) 권태상,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미국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18권 제4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3-4면(미국에서 퍼블리시티권은 1953년 연방 제2고등법원의 Haalan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이 판결은 프라이버시권에 추가적인 사항과 프라이버시권의 독립적인 사항으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사진의 공표가치에 대한 권리 즉 그의 사진을 공표할 배타적 특권을 부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이를 퍼블리시티권으로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후 Nimmer는 퍼블리시티권을 ‘자신이 스스로 창조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공표가치를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였으며, 1977년에는 연방대법원도 Zacchini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언급하고 이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1995년 부정경쟁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he Law, Unfair Competition)는 퍼블리시티권을 부정경쟁방지법의 한 내용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McCarthy는 ‘자신의 동일성의 상업적 이용을 통제하는 모든 사람의 고유한 권리’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형사사법에서의 의미는 일반시민들이 재판 전에 미리 텔레비전과 같은 미디어 매체뿐만 아니라 IT기술의 고도화와 SNS이용의 급증으로 미리 일정한 재판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공영호, “재판 전 퍼블리시티가 국민참여재판에 미치는 영향-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6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485-487면).

통령과 아들 박OO씨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이다. 항상 모든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황으로 갈등을 만들어 낸다. 이 사건도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표현의 자유 그리고 상대방의 명예훼손이라는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의 관점에서 갈등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결과 시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에 재판부가 손을 들어준 사건으로서 의미가 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OO 전(前) 대통령과 아들 박OO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OO 시사인 기자와 김OO 만지일보 총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OO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가 있으며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볼 때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²⁶⁾

재판부는 박OO씨에 대한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해 ‘주OO씨는 의혹 제기 앞서 핵심인물인 박OO씨의 사전 행적과 평소 관계 등에 대해 적지 않은 취재를 하는 등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다.’며 ‘재판부의 검토 결과 의혹 제기 근거들이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前)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주OO씨가 출판기념회에서 예정에 없던 발언을 요청받고 즉흥적으로 얘기한 과정에서 박 전(前)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긍정적 평가에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이지, 독립적인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인간 존엄의 핵심적 가치이며, 국민의 행복 추구권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자 국가권력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시·통제하는 수단이다.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언론 활동은 최대한 인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독자나 청취자의 몫으로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 자세한 내용은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www.inews@kookje.co.kr 접속일자: 2016년 11월 29일) 2015년 1월 17일자 참조.

이에 검찰이 항소하여 2심에서 다시 주OO씨에게 징역 3년, 김OO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을 가득 메운 나꼼수 팬클럽 회원 등 100여명은 일제히 환호하며 박수를 쏟아냈다.

주OO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OO 당시 후보의 동생 박OO씨가 5촌 조카인 박OO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OO씨와 함께 이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또 2년 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前)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튀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2011년 박OO 피살사건과 관련, 경찰은 박OO씨의 5촌 조카인 박OO(사망)씨가 금전 관계 때문에 다른 사촌인 박OO씨를 살해한 뒤 자살했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소위 나꼼수사건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에서 가지는 의미는 첫 번째, 개인의 명예와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권리 간의 충돌 문제이다.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손을 들어 주었지만, 권리의 충돌이라는 문제에서 생각해 보면, 권리의 중요성을 따지는 선후(先後)는 일정하게 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각 사건이 가지는 상황과 분위기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다.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관의 판결 모두 무죄가 선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한 점은 국민참여재판의 목적인 사법절차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성 확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경우는 되도록 항소심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2. 퍼블리시티(Publicity) 사건에 대한 시민의 우려

소위 ‘안OO 시인’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해 대선 당시 박OO 후보가 안중근의사 유묵 도난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안OO 시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과거에는 사법부가 국가권력 내지 정치권력의 꼭두각시로 전

락해 시민을 위한 시민사법의 확보 내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을 일정부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 평결의 결과를 재판관이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을 시민을 위한 사법, 시민에 의한 사법으로 정의해 본다면 이 사건은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안OO 시인이 28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전주지법 1호 법정 앞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²⁷⁾

지난해 대선 당시 박OO 후보가 안중근의사 유묵 도난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안OO(52·대학 교수) 시인이 2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받았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인 형사2부(재판장 OO)가 ‘견해가 다르다’며 선고를 연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선 당시 문OO 민주당 후보의 시민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OO 시인의 재판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14시간 넘게 피고인과 검찰 쪽의 열띤 공방 속에 진행됐다. 마침내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일부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지만 법관은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상충점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선고를 11월7일 오전 10시로 미뤘다.

이를 두고 안OO 시인의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의 관행대로 재판 당일 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비판한 반면, 여권 일부에선 배심원의 무죄 평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법관 출신인 이OO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어려운 법률적 쟁점이 많다. 이런 사건에 배심제가 적절한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24일에는 박OO 후보의 5촌 조카 사이에 벌어진 살인사건에 대해 박OO 후보의 동생 박OO씨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OO(40) <시사인> 기자와 김OO <딴지일보> 총수에 대해 배심원

27) 자세한 내용은 2013년 10월 30일자 한겨레뉴스(<http://www.hani.co.kr/arti/>) 참조.

9명 가운데 6명이 무죄 의견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OO)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도 여당 쪽에서 ‘인기영합 판결’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이처럼 지난 대선 때 박OO 후보에 관한 의혹 제기를 했다가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배심원들이 잇따라 무죄 평결을 내리면서, 국민참여재판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직업 법관이 재판을 독점하다 보니 시민 상식과 어긋난 판결이 종종 나오자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문제는 정치적 사건을 중심으로 논쟁이 일면서 ‘시민의 사법참여’라는 제도의 본질이 희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참여재판 도입을 앞장서 주장했던 한 법조인은 ‘법관의 고유 영역이었던 재판에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른바 ‘권력에 대한 도전’이었다. 최근 나타나는 배심원 평결에 대한 비난은 참여재판의 이런 속성을 눈치 챈 권력이 시민 권력을 견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OO·주OO씨 사건과 안OO 시인 사건의 잇따른 무죄 평결에 대해 여당과 일부 보수언론에서 우선 내놓은 주장은 ‘정치적인 사안은 참여재판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 사건일수록 오히려 참여재판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있다. 서OO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판사·검사 등 관료들은 법질서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다. 선거사범은 ‘승자의 재판’이 될 우려가 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만약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됐다면 기소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사건일수록 시민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정치적 사건은 오히려 참여재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 등의 법리가 어렵기 때문에 직업법관이 판단을 해야 한다는 논리도 제기된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은 법리가 어렵거나 전문 식견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오히려 법관이 일반인의 상식과 관점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 이런 사건이야말로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OO 민주당 후보의 지지자가 다수였던 전북지역에서 문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던 안 시인의 재판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제기도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배심원은 해당 법원이 관할하는 지역민 중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미국에서는 흉악 범죄 용의자에 대한 지역민들의 편견이 강한 경우 재판 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도 하지만, 이는 오히려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심의관인 강OO 판사는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재판 지역을 옮기는 게 현실성이 없다. 배심원 선정은 검찰·피고인 양쪽 모두 동의해야만 가능하다. 양 당사자가 치열하게 배심원 선정을 하고 법리 공방을 해야 한다. 즉, 배심제 취지가 시민 상식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배심원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미국 배심제의 권위자인 벨러리 OO 코넬대 로스쿨 교수는 여론재판 우려에 대해 ‘참여재판의 장점은 여러 사람의 다양한 양심이 반영되고 (평의를 통해)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²⁸⁾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에는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권고적 효력만 갖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 재판에서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고 있다.

2009년 서울 마장동 축산물유통업체 직원 문OO씨가 이웃 가게 종업원 김OO씨와 시비 끝에 흥기로 내리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배심원 7명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2심은 이와 달리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1년 3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함부로 뒤집을 수 없고, (배심원 평결은) 한층 더 존중돼야 한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등 대부분 배심제를 운영하는 나

28)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뉴스(www.hani.co.kr, 접속일자: 2016년 11월 30일) 참조.

라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25%가량 된다. 배심원들이 법관들보다 유죄 인정을 까다롭게 하는 이유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참여재판과 일반재판을 비교하면, 무죄율과 실형률에서 참여재판이 모두 높게 나타난다. 이는 2008년 시행된 참여재판에서 강도·살인·성폭행 등 형이 무거운 사건이 주요 대상이었고, 모두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일반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참여재판에서는 유·무죄를 다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죄율이 높은 것이다. 무죄율이 높다고 해서 배심원이 ‘바주기 평결’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실형률이 높은 이유도 형이 무거운 사건들이 주요 대상이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이 형사합의부의 모든 사건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김OO·주OO 씨 사건이나 안OO 시인의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도 시민들의 재판 참여가 가능해졌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 이어서 배심제에 대한 비판은 예상된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배심원 결정을 재판부가 거부할 수도 있는 만큼 판결의 모든 책임을 배심원에게 돌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면 재판부가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다.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결정하고 판사는 형량만 정하는 미국의 배심제와, 시민과 법관이 함께 재판부를 구성해 유·무죄 여부와 형량까지 정하는 독일의 참심제 등 오랜 전통을 가진 외국 배심제도에 견주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정착을 위해 확대 시행을 꾀하고 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은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힌 뒤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경우나 논리법칙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만 배심원 평결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을 부여한 것이다. 또 현재까지는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참여재판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의 신청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도 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했다. 재벌·정치인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해진다. 현행 단순 다수결 방

식에서 배심원의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평결 정족수도 강화된다.

국민참여재판의 제한은 사회적 강자의 위치에 있는 법조인이 재판을 장악하겠다는 논리이다.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위해 법정에서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스템이 확대되어야 한다.

일명 나꼼수 사건과 안OO 시인 사건과 같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부관계자 및 여당은 정치적 사건 내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그동안 직업법관에 의해 진행된 사법절차의 문제점을 시민참여라는 시민사법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쟁점이 많다는 이유 내지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법률적 쟁점이 많은 사건 또는 정치적 민감성을 가진 사건일수록 다양한 시민들의 법감정과 상식에 기초한 사법절차가 요구된다.

3. 퍼블리시티(Publicity)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의 배제

유사한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는 지역과 그 지역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국민참여재판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일반적 상식과 법감정의 반영이라는 국민참여재판이 지역에 따른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러한 민감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피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민참여재판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지역별 정치성향과 피고인의 지명도에 따라 배심원 평결이 엇갈리는 치명적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정치성향이나 자의적 해석에 휘둘릴 수 있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⁹⁾

29) 자세한 내용은 news1뉴스(www.news1.kr)참조.

바른사회는 최근 시인 안OO 등의 명예훼손 재판결과를 거론한 논평에서 이 같이 말하고 ‘대법원은 허점을 신속히 보완해 조속한 제도의 안착에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아래의 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논평의 전문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OO씨에 대한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라고 판결했다. 불과 며칠 전 박OO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 주OO·김OO씨도 서울중앙지법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후 무죄선고를 받았다. 반면, 비슷한 사건임에도 8월말 부산지법에선 허위사실로 박OO 후보를 비방한 혐의에 대해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판결이 나왔다. 그야말로 지역별 정치성향에 따라, 피고인의 지명도에 따라 배심원 판결이 엇갈렸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치명적 맹점이다. 국민 상식과 법 감정 반영 취지가 거꾸로 국민감정과 정치편향성 투영이라는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이 모든 형사합의부 사건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배심원 판결 효력에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했다. 국민참여재판이 확대되고 제도적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지하는 정당과 이념의 쏠림현상이 강한 우리사회에서 지역의 정치적 분위기나 배심원 성향에 따라 정반대의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또한 나꼼수 지지자들이나 문OO 의원의 참관처럼 재판정 분위기가 배심원단의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에서 정치적 사건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정치성향이나 자의적 해석에 휘둘릴 수 있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배제하며, 대법원은 허점을 신속히 보완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길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정치적 감정이 시민들 사이에서 다르게 표현된다. 따라서 일정한 사회적 이슈로 작용했던 사건들이 각 지역에 따라서 재판절차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사건들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범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각 지역마다의 정치적 성향이나 감정들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정치성향에 따라 사건의 결과에 다른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은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배심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 정치적 성향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일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바꾸어 배심재판을 진행한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의 경우도 지역적 정치 성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지역에서 법원 관할을 바꾸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V. 퍼블리시티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국민참여재판은 시민들의 사법절차 참여를 통해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의 목적 실행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가 재판절차 진행 전(前) 퍼블리시티라고 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는 배심원들이 사법절차 중에 제시된 증거만으로 평결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배심원단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결정에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의 보급과 매스미디어의 보편화 및 일상화로 인해 배심원의 인식자체에 편견이나 편향적 퍼블리시티로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편견과 편파적 인식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고, 주로 우리보다 앞서 배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 배심제도에서 겪었던 퍼블리시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시행해 왔던 방안들을 고민해 보려고 한다.

1.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선정을 위한 심문절차 보완

국민참여재판의 목적은 사법절차에 시민참여를 통한 일반적 상식과 법감정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판절차 진행 전(前) 퍼블리시티로 인해 시민 참여라는 목적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판절차가 이루어지기 전(前) 퍼블리시티에 의해 이미 심리적 내지 감정적 영향을 받은 배심원단을 구성할 각 배심원 후보자를 재판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다.³⁰⁾ 미리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재판절차 전(前) 일정한 심리적 동요를 가지게 된 배심원 후보자를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정에 현출된 증거와 증인으로만 편견 없는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배심원단을 구성하기 위한 각 배심원 후보자의 선정절차는 재판절차 전(前) 배심원 후보자가 대중매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를 인지할 수 있다. 특히, 배심원 후보자가 재판에 관련된 내용 및 절차에 대해 어떤 정보 내지 어느 정도의 정보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견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재판절차 중 심문절차에서 배심원 후보자가 재판의 내용 내지 절차에 대한 직접적 편견을 표출했다면 이는 이유부 기피에 포함될 것이다.³¹⁾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유부 기피사유에 포함되는 편견의 내용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편견을 사고(思考)하고 있음을 외부에 노출시키고자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인 왜곡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재판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편견을 가진 배심원 후보자의 생각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추측이 가능하다면 무이유부 기피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³²⁾

그러나 배심원 후보자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절차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대중매체가 가해자 또는 피고인에

30) Ruva, Christine L., *Law and Legislation: How Pretrial Publicity Affects Juror Decision Making and Memory*(1st ed.), Nova Science Publishers, Inc., 2010.

31) 박호현,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58면; 한상훈, “미국배심제에서 배심원 선정절차”, 「저스티스」 제94호, 한국법학원, 2006, 159-160면; Hans, Valerie P. & Vidmar, Neil, *Judging the Jury*(1st ed.), Perseus Publishing, 1986.

32) Levine, James P., *Juries and Politics*(1st ed.), Brooks/Cole Publishing Co., 1992, p. 48.

게 불리한 사항들을 보도했거나, 재판절차가 진행되기 전(前)이라도 피고인이 절차에서 범인으로 확정판결이 날 것으로 추측하는 추측성 편파보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배심원 후보자가 그 매체를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유부 기피의 대상에 포함시켜 배심원단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법관은 재판절차 진행 전(前) 퍼블리시티가 있었음에도 배심원 후보자가 극단적인 편견을 가지지 않고 시민의 일반적 상식과 법감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절차의 진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한다. 따라서 배심원 후보자가 편견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절차를 이끌 수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법관은 그 의견을 존중하게 된다.³³⁾

그러나 재판절차가 진행되기 전(前)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의 일반적 상식과 법감정을 투영하겠다는 배심원 후보자의 스스로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러한 이유는 재판절차가 진행된 후에 절차 전(前) 외부요인에 포함되는 퍼블리시티에 의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판절차가 진행되기 전(前) 대중매체에 의한 영향을 받았음에도 이를 외부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심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³⁴⁾

따라서 배심원 스스로가 대중매체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판절차에서 이미 무의식속에 잠재하고 있는 개인의 편견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찾을 수 있는가이다. 예를 들어 재판절차가 진행되기 전(前) 대중매체를 통해 이미 범죄사건에 대한 유죄인식을 가졌다면 실질적으로 재판절차가 진행된 이후 절차에서 현출되는 증거와 증인만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배심원이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심원에 대한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배심원 후보자 개인적 사고(思考)와 판단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야 하고, 배심원 후보자가 퍼블리시티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서 이유부 기피와 무이유부 기피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통해 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질문이 이루어져야 한다.³⁵⁾

33) *Mu' Min v. Virginia*, 500 U.S. 415, 1991, pp. 431-432.

34) Jonakait, Randolph N., *The American Jury System(1st ed.)*, Yale University Press, 2003, pp. 110-111.

2. 지역의 여론이 편중된 사건에 대한 재판장소 변경

퍼블리시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경우가 재판절차 진행 전(前) 범죄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적 영향이다. 따라서 범죄사건이 발생했던 장소의 관할법원을 변경하는 것이 퍼블리시티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재판장소의 변경을 통해 미국은 지역에서 발생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범죄사건을 다른 지역의 관할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미국에 비해 국토의 면적이 좁고 지역적 정서와 여론에 대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재판장소의 변경을 통해 퍼블리시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국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³⁶⁾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15조 제2호에서 관할이전의 신청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와 피고인은 관할이전 신청의 주체로서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역의 여론이 편중된 사건에 대한 재판장소 변경에 대한 절차적 규정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5조 제2호 내용을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재판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재판절차가 진행되기 전(前) 범죄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퍼블리시티가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장소의 변경, 즉 법원의 관할변경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는 퍼블리시티와 관련해 재판장소 변경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총체적 상황 테스트(Totality of Circumstances Test)’를 법원이 시행하게 된다.³⁷⁾ 이러한 테스트는 다양한 요인들을 생각하게 되고, 이는 배심원 선정절차에 대한 기록, 재판절차 진행 전(前) 지역여론, 배심원단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역할증대와 노력의 범위 등이다.³⁸⁾ 그리고 사법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제대

35)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Rule. 24.(b).

36) 박호현, 앞의 글, 152-153면.

37) Murphy v. Florida, 421 U.S. 794, 799(1975).

로 이루어져 피고인의 권리가 보호되었는지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하급법원은 일반적으로 재판장소 변경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급법원이 재판장소 변경에 대한 신청에 대해 거부한 경우 항소법원도 하급법원의 결정에 커다란 하자가 없는 경우 하급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경향을 보이고, 연방대법원은 테스트 기준에 대한 분명한 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재판장소 변경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 회의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⁹⁾

이러한 법원들의 재판장소 변경에 대한 회의적인 원인을 제외하고도 재판장소 변경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재판장소를 변경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 및 불편함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판장소 변경신청에 수동적 내지는 회의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다.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시민들의 일반적 법감정과 정치적 사고(思考)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슈들로 여겨졌던 사건 또는 사항들이 각 지역적 상황과 시민들의 인식에 의해 재판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이슈로 여겨졌거나 정치적으로 화두가 된 사건들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에 포함되기도 하였다.⁴⁰⁾

38) *Dobbert v. Florida*, 432 U.S. 282, 302(1977).

39) 총체적 상황 테스트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표출한 재판들 중 대표적인 예로 텍사스 주(州) 휴스턴에 위치한 Enron(社)의 CEO였던 Jeffery Skilling에 대한 형사재판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재판 당시 Enron(社)가 휴스턴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Enron(社)의 파산으로 인한 효과가 지역사회에 끼칠 파장이 매우 컸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퍼블리시티가 만연한 상태였다. 이러한 이유로 Skilling은 재판장소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후 휴스턴 연방 지방법원은 대중매체에 의한 부정적 퍼블리시티의 형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재판장소 변경신청이 거부되어 결국 피고인은 배심원단의 유죄평결로 24년 형의 선고를 받았다. 연방대법원 또한 Skilling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된 배심원단에 의해 재판을 받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그 이유 설명은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 대중매체 등을 통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배심원 후보자를 선발하지 않기 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심문이 이루어졌고, 결국 배심원단은 피고인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Skilling v. United States*, 130 S. Ct. 2896, 2900-1, 2010).

40) 자세한 내용은 2013년 11월 29일 의안번호(8204)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참조.

따라서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과 시민들의 개인적 법감정이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역적 정치성향에 따라 사건의 결과에 다른 영향을 준다면 관할법원을 변경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국민참여재판이 시민들의 지역적 정치성향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지역에서 법원의 관할을 변경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3.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효성 있는 배심원 실시절차 마련

형사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의 증인 심문과 증거물 제출 등 모든 재판절차가 종료되면 재판관은 배심원들에게 심의 때 논의하게 될 사항들과 적용법조를 배심원 설시로 전하게 된다.⁴¹⁾ 재판관이 배심원들에게 전달하는 배심원 설시는 법관이 재판절차 전(前) 대중매체 등에 의해 재판절차 내지는 범죄사건에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즉 퍼블리시티에 의해 배심원들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고, 오로지 재판절차의 과정에서 현출된 증거와 출석한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만 배심원들은 평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⁴²⁾ 따라서 배심원들에 대한 설시는 배심원들이 재판절차 진행 전(前) 퍼블리시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사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절차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리 퍼블리시티를 경험했던 많은 배심원들은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염려해 법관의 배심원 설시를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이와는 반대 경우인 배심원들의 의도적 무시 또는 무의식적 퍼블리시티에 의해 편견이나 선입견이 생긴 배심원들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배심원들의 의도적 법관설시 무시는 배심원들의 논의와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할 수 있

41) Kempinm Jr., Frederick G., *Historical Instruction to Anglo-American Law(1st ed.)*, West Publishing Co., 1991, p. 70.

42) 공영호, "Jurors' Online Research and Communication in the U. S. Jury Trials and the Measures to Deter Such Jury Misconducts", 「민사소송」 제18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4, 397면.

다. 그러나 대중매체 등의 영향을 미리 받은 배심원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미 편견이 형성되어 버린 경우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절차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배심원들과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에서는 개인의 편견 및 선입견을 발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⁴³⁾ 그리고 소수의 배심원들 가운데 재판절차의 진행 전(前) 대중매체를 통해 인지하게 된 정보와 재판절차의 진행 중에 현출된 증거와 증인의 증언 사이의 ‘근원적 혼동(Source Memory Errors)’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재판절차에서 법관이 하게 되는 배심원 설시는 역할론적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재판절차 진행 전(前) 대중매체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재판절차 진행을 통해서 인지하게 된 사실들을 실질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면, 재판절차 진행 전(前) 대중매체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재판절차에 반영하지 말라는 법관의 설시는 그 효과성을 상실하게 된다.⁴⁴⁾ 따라서 재판절차에서 퍼블리시티를 통한 배심원들의 선입견과 편견을 반영치 못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배심원 설시가 마련되어야 한다.

4.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기일 연기를 통한 원활한 재판절차 마련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이 미리 대중매체 등으로 인해 사건에 대한 일정한 선입견 및 편견이 발생한 때에는 재판절차의 시기를 일정기간 연기하여 특정 범죄사건의 재판절차에 작용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 퍼블리시티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에 의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줄어들고, 개인의 감정에 치우쳐 생각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⁴⁵⁾ 그러나 재판절차는 재판진행 당시의 증거물과 증인의 증언을

43) *Duncan v. Louisiana*, 391 U. S. 147, 156(1968); *Sparf v. United States*, 156 U. S. 51 (1985).

44) Johnson, M. K., Hashtroudi, S. & Lindsay, D., "Source Monitor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4 No. 1., 1998, pp. 3-28.

45) Petty, Richard E. et al., "Implicit Ambivalence from Attitude Change: An Exploration of the PAST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0 No. 1., 2006,

통해서 진행된다. 즉 재판절차에 대한 증거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당사자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증인과 증거물의 확보라는 원활한 증거개시 절차를 위해서는 재판절차를 연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도 없지 않다. 또한 재판기일의 연기로 인한 사법적 경제부담, 사법의 비효율성,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으로 인해 법원이 재판기일 연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⁴⁶⁾ 하지만 세월호사건과 같이 대중매체에 의한 퍼블리시티가 강한 경우에는 재판절차에 대한 기일연기는 대중매체에 의해 발생한 배심원들의 선입견 내지는 편견을 배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사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여겨진다.

V. 결 론

사법부의 독립은 정부와 정치권의 외압으로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절차를 이끌어내고 다양한 시민들의 민주화의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은 정부나 정치권의 외압에서 벗어나는 결과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감시와 통제까지도 벗어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결과는 소위 사법시험에 합격한 소수 엘리트 법조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권위주의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료사법은 국가의 주인인 시민을 위한 사법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시민들의 어떠한 감시와 통제도 거부하는 가장 민주적이지 못한 권력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그동안 사법부가 가진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배제할 수 있는 사법제도가 요구되었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한 국민참여재판이다.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통해 법률 제 8495호로 2007년 6월 1일 제정되었고, 이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pp. 21-41.

46) 자세한 내용은 2013년 10월 29일자 법률전문 인터넷 뉴스 로이슈, 배심원 '안도현' 무죄 판결, 재판부 선고 연기 '배심원 무시?'(www.lawissue.co.kr) 참조.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은 2012년까지 시범기간을 거쳐 2013년부터 실질적 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 중 본 논문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절차가 진행되기 전(前)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될 일반시민들이 텔레비전과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특정사건에 대한 편견 내지는 선입견이 생긴 경우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소위 퍼블리시티(Publicity)라고 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첫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선정을 위한 심문절차 보완 둘째, 지역의 여론이 편중된 사건에 대한 재판장소 변경 셋째,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효성 있는 배심원 실시 절차 마련 넷째,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기일 연기를 통한 원활한 재판절차 마련 등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진정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일반상식, 일반적 통념, 일반적 법감정에 의해 재판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심원의 퍼블리시티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퍼블리시티의 해결은 앞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재판절차의 진행이라는 시민사법을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자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공영호, “Jurors’ Online Research and Communication in the U. S. Jury Trials and the Measures to Deter Such Jury Misconducts”, 「민사소송」 제18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4.

_____, “재판 전 퍼블리시티가 국민참여재판에 미치는 영향-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6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권태상,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미국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18권 제4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김석준, 「미군정 시대의 국가와 행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한영문화사, 2010.
- 이국운, 「법률가의 탄생」, 후마니타스, 2012.
- 김태룡, 「행정이론: 행정사와 이론을 중심으로」, 대영문화사, 2010.
- 박호현,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5.
- 柄谷行人/송태욱 옮김, 「일본정신의 기원」, 이매진, 2003.
- 신진욱, 「시민」, 책세상, 2008.
- 안경환·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2005.
- 윤지영, “재판전 단계에서의 국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연구총서 제1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이범준,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궁리, 2009.
- 이지문, 「추첨민주주의 강의」, 삶창, 2015.
- 이헌환, “한국 사법사에 비추어본 1971년의 사법파동”, 「법과사회」 제15권 제1호, 법과사회이론연구회, 1997.
-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2012.
- 장규원·박호현, “형사사법에서 시민참여에 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2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4.
- 최선우, 「경찰학」, 그린, 2013.
- 탁희성·최수형,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V):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평가와 정책화 방안”, 「형사정책연구 연구총서 제27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한상훈, “미국배심제에서 배심원 선정절차”, 「저스티스」 제94호, 한국법학원, 2006.
- 한옥신, “사법파동의 교훈”, 「사법행정」 제12권 제9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71.
- 한인섭·한상훈, 「국민의 사법참여」, 경인문화사, 2010.
- April Carter/조효제 옮김, 「직접행동」, 교양인, 2007.
- Michael Phillips·Ernest Callenbach/손우정·이지문 옮김, 「추첨 민주주의: 선거를 넘어 추첨으로 일구는 직접 정치」, 이매진, 2011.

2. 외국문헌

- Dobbert v. Florida, 432 U.S. 282, 302, 1977.
- Duncan v. Louisiana, 391 U. S. 147, 156(1968); Sparf v. United States, 156 U. S. 51, 1985.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Rule. 24.(b).
- Hans, Valerie P. & Vidmar, Neil, Judging the Jury(1st ed.), Perseus Publishing, 1986.
- Johnson, M. K., Hashtroudi, S. & Lindsay, D., “Source Monitor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4 No. 1., 1998.
- Jonakait, Randolph N., The American Jury System(1st ed.), Yale University Press, 2003.
- Kempinm Jr., Frederick G., Historical Instruction to Anglo-American Law (1st ed.), West Publishing Co., 1991.
- Levine, James P., Juries and Politics(1st ed.), Brooks/Cole Publishing Co., 1992.
- Mu’ Min v. Virginia, 500 U.S. 415, 1991.
- Murphy v. Florida, 421 U.S. 794, 799, 1975.
- Petty, Richard E. et al., “Implicit Ambivalence from Attitude Change: An Exploration of the PAST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0 No. 1., 2006.
- Ruva, Christine L., Law and Legislation: How Pretrial Publicity Affects Juror Decision Making and Memory(1st ed.), Nova Science Publishers, Inc., 2010.
- Skilling v. United States, 130 S. Ct. 2896, 2900-1, 2010.

3. 기타

국회의원총람편찬위원회,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총람, 2008.

[Abstract]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Juror's Publicity Problem and Solution

Park, Ho-Hyun

Lecturer of Div. of Police Administration, Wonkwang University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that people firstly participate in criminal trial in history of Korea starts With expectation for securing the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and for strengthening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confidence of general people about criminal justice. But, there are concerns as the credibility of jury verdict, the unfair selection of juror, the increase of expense, the non-binding nature of the verdicts.

We should watch the development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about the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the strengthening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confidence of general people about criminal justice and the increase of expense. But, it is positive that 'the Privileges of Former Post' and 'All mighty is the dollar' do not exist in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Concerns for the credibility of juror verdict and the unfair selection of juror proved to be unfounded. But the biggest problems are low-end receipt ratio and a high withdrawal and exclusion ratio. Due to high appeal ratio and advice effect of the jury verdict, the effectiveness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is being intensively criticized. The passive participation is discussed with directly-opposed judging the attendance rate of juror.

But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s the most important is pretrial publicity. Through this, juror can have a prejudice. But trial consists

of witness attendance and submission of evidence. These will make juror or judge's conviction. So publicity is the most important matter. For this reason, this paper will show citizen participation's necessity and publicity's problems. Eventually, this paper will show publicity's problems and publicity's solution plan in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Key words :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Publicity, Prejudice, Citizen Participation, Democracy, Trust